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4,406,712	9,132,201
일반회계	257,039,790	7,711,194
특별회계	47,366,922	1,421,008
공기업특별회계	37,574,918	1,127,24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343,488	550,30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231,430	576,943
기타특별회계	9,792,004	293,760
주택사업특별회계	6,600	19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43,549	31,306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162,094	4,863
주차장사업특별회계	672,067	20,162
공업단지특별회계	892,378	26,771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609,532	198,28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51,062	10,532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계	15,768	473
기반시설특별회계	38,954	1,169

제 2 조 세입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77,081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최종)예산 성립후 교부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간주처리 한다.